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국가재정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에 의해 설치된 중장기전략위원회가 민간 자문기구로 개편됨에 따라 동규정에서 삭제되는 재정전략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자 함.

나.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요구는 커져가는 상황에서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활성화함으로써 재정 운용전략 및 혁신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조정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 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등을 위한 협의를 위해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설치(안 제2조의2 제1항)
- 2) 지출효율화 및 재정수입 확충,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위험요인 점검 등 재정혁신 및 재정 운용전략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안 제2조의2 2항)
- 3)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안 제2조의2 3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협의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재정운용전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재정운용전략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1.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전략의 수립·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전략의 수립·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재정 전망과 위험요인의 점검·분석에 관한 사항
4. 재정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제도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정혁신 및 재정운용 전략의 수립·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제2차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위원장이 안전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4. 재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민간위원
-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제4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운용전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조의2(재정운용전략협의회) ①</u> <u>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조제6</u> <u>항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의</u> <u>수립 등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u> <u>재정운용전략협의회(이하 “협</u> <u>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u> <u>다.</u> <u>② 재정운용전략협의회는 다음</u> <u>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u> <u>조정한다.</u> <u>1.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전략의</u> <u>수립·추진 및 제도 개선에</u> <u>관한 사항</u> <u>2.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전략</u> <u>의 수립·추진 및 제도 개선</u> <u>에 관한 사항</u> <u>3. 중장기 재정 전망과 위험요</u> <u>인의 점검·분석에 관한 사항</u> <u>4. 재정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u> <u>제도의 총괄·조정</u><u>에 관한 사</u> <u>항</u> <u>5. 그 밖에 재정혁신 및 재정운</u> <u>용 전략의 수립·추진을 위해</u> <u>기획재정부장관이 중요하다고</u>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제2차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위원장이 안전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4. 재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민간위원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제4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	
연 락 처	(044) 215 - 5723